

보호자 소식지 제3호

모두의 존엄이 꽃피는 학교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과 아동인권 증진
- 인권칼럼 우리는 아동인권을 잘 모른다(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인권특특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일곱 빛깔 무지개(Q&A)
- 학생인권옹호관의 돋보기 아동학대와 아동의 생명권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과 아동인권 증진

학교 관련 주요 권고 및 이행을 중심으로 -

1991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1996 제1차 최종견해**

-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 대상 협약 교육 및 학교 교과에 아동권리 교육 포함 권고
-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권고
- 학교생활에 대한 아동 참여 증진(표현의 자유 보장 등) 권고
- 아동 위한 옴부즈맨 또는 기관 설치 권고

2003 제2차 최종견해

- 교육부 지침, 학교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모든 아동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참여권 보장 권고
- 장애아동, 외국인 아동 등의 교육 등 사회권 보장 권고
- 취학 전 교육, 중등교육 무료화 전략 개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에 대한 소위원회 설립과 아동의 접근성 보장 권고

2011 제3·4차 최종견해

-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아동의 견해가 표현·존중 될 수 있는 입법조치 권고
-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권고
- 폭력 피해 아동의 신고제도 마련 권고
- 지나친 경쟁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불평등 해결 위한 공교육 강화와 휴식권·문화향유권 보장 권고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권고함.

***소식지 제1호(<https://url.kr/3t48uv>)에서 관련내용의 인권적 의미를 칼럼으로 다룬 바 있음.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노력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인권침해 진정절차 도입
 - 국내 인권교육 계획·운영 시작
- 2002년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 관련 내용 도입
- 2005년 중학교 교육 의무화(「교육기본법」 제8조)
- 2007년 학생인권보장 법적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2008년 불법체류자 아동의 초등학교 입·전학 허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 2010년 국내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경기도)
- 2010년 대법원,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선고
- 2011년 학교 내 체벌금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자살예방법」 제정
-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제정
- 2019년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
- 2020년 선거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공직선거법」 개정)
- 2021년 「민법」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2019 제5·6차 최종견해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근거 마련 및 아동관련 종사자 대상 의무적 인권교육 권고
- 학교에서 성적 등에 따른 차별 예방 및 근절 권고
- 모든 환경에서의 간접체벌 포함 모든 체벌, 법률 및 관행상의 금지 권고
- 선거 및 정당가입 연령하향 권고

※ 이외 학교관련 제5·6차 최종견해 내용이 알고 싶다면 3쪽 인권칼럼을 읽어주세요^^



최종견해 전문 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일곱 빛깔 무지개

인권톡톡
(Q&A)



01. 협약의 배경이 궁금해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아동들이 생명을 잃고 빈곤과 질병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UN은 1959년 총회에서 아동이 가진 특성에 따라 보호받고 기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합니다.

이후 UN은 선언 30주년을 맞은 1989년 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채택일인 11월 20일을 매년 세계 아동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UN이 채택한 협약 중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가입한 협약이기도 합니다.

02. 협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부터 제41조까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 제42조부터 제54조까지는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설명하는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 공동사제집」
(경기도교육청 등 7개 교육청, 2020) 참고

03.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원칙이 있을까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비차별** : 아동은 인종, 성별, 나이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제2조)
- 아동 최상의 이익**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제3조)
- 생명, 생존 및 발달** : 국가는 아동이 범죄, 기아 등의 이유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제6조)
- 의견 존중과 참여** :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제12조)

-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
(보건복지부 · 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참고

04. 보호자로서 꼭 알아야 할 협약 내용은 무엇인가요?

보호자는 1차적 아동인권옹호자입니다. 아동인권옹호자인 우리 모두는 협약의 내용 전체를 알고, 아동의 인권 존중과 보호, 증진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제41조).

➔ 협약 전문 읽기 : <https://url.kr/28s7fp>



아동권리협약, 시민대상 사이버 강좌
(「아동권리협약」 검색)

05. 협약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있나요?



영국의 에글렌타인 켄은 1923년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선언”을 발표하였고, 이는 이듬해 국제연맹회의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협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출처 : 위키백과

잠깐 아동권리선언이 발표된 같은 해(1923년),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인권에 관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은 “어린이공약”을 발표하여, 어린이에 대해 완전히 인격적으로 예우하고, 만 14세 이하 노동을 폐지하며, 어린이가 배우고 놀기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 「존중받고 존중하는 영혼을 위한 아동인권」(김희진, 2019) 참고

06. 노키즈존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와 같은 아동인권 침해해 겪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출입을 금지한 A식당에 대해, 일부 사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하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 판단하고, 식당이 주장한 어려움은 보호자 대상 안전사고 방지 주의와 경우에 따른 이용제한을 미리 고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아동대상 인권침해해 겪은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https://url.kr/nsept5>
- ➔ 학교 관련 진정: 학생인권옹호관 구제 신청(4쪽)

07. 자녀와 아동인권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책을 추천해주세요.

「나는 놀고 창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있어요!」
(알랭 세레, 고래이야기, 2020)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추천 도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름을 가질 권리, 먹고 마실 권리, 치료받을 권리, 배울 권리 등)에 대한 그림책입니다.

➔ <https://url.kr/fw74yt> (자료실, 113번 글)



우리는 아동인권을 잘 모른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의 의미와 현재 | 공현*



아동인권에 관한 오해들

사람들은 아동인권이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많이 들어봤으며,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알고 있다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먼저, 사람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이르는 아동이 10대 초반 정도까지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권리의 주체인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들이다. 그 취지는 ‘성인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 즉 사회적·제도적으로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인권 문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다루는 범위에 해당된다.

둘째, 아동인권의 문제라 하면 사람들은 학대로부터의 보호나 아동노동 금지 등의 제한적 이미지만 떠올리는 일이 잦다. ‘인권’은 본래 여러 자유권, 사회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이르는 것임에도 말이다.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의 시초격인 1924년 제네바선언이나 1959년 아동인권선언은 보호받을 권리, 생존할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다 1989년 만들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이르러서야 사생활의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여의 권리 등이 명시되었다. 아동이 일반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 하나의 인격체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번역’한 학생인권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것은 1989년, 대한민국이 협약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의 일로 이제 꼭 30년이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30년이란 시간에 걸맞지 않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 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은 11%, 주양육자는 15.5%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받아, 초·중·고 학교에서 아동인권이 더 잘 지켜지도록 만든 지역의 자치 법규가 학생인권조례이다. 전 세계에 적용되는 보편적 내용으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한국의 학교 현실에 맞게 ‘번역’ 및 ‘해설’하고 ‘현지화’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의 6곳밖에 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가입 국가들을 심의하는데, 2019년 제5·6차 심의에서 지적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학교 체벌 금지 등의 조치를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학생인권 보장을 조례가 아닌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 및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함께 봐야 할 것들

아동인권 및 학생인권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생인권조례부터 한 번 공부해보는 것이 좋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가입국의 이행상황에 대해 심의한 후 내놓는 최종 견해도 좋은 참고 자료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와 권고를 통해 국가가 협약 이행에 동참하도록 변화를 유도하니, 협약에 가입한 우리에게 이러한 권고를 유념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심의에서는 한국의 아동들이 직접 위원들을 만나 한국의 경쟁적 교육과 학업 부담, 성적 차별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스쿨 미투 운동을 소개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10월, 심의 결과를 담아 발표한 제5·6차 최종 견해 중 학교와 관련된 내용만 몇 가지 살펴보자.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성적과 관계없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으며,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권 문제로 주목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스쿨 미투 운동에 관해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차별 없고 적절한 성교육을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의 참여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동의 참여가 제한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2011년의 제3·4차 최종 견해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비롯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권고하기도 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보고서 심의 장면 (한국 아동들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이야기 소개 부분)

특히 교육 제도에 관해서는 1990년대 제1차 심의부터 여러 차례 ‘매우 경쟁적인 교육 환경’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제5·6차 최종 견해에서도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을 지적 하면서, 한국의 교육 제도와 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규범을 대한민국의 ‘현재’로 만들려면

올해 발표된 국제아동삶의질조사(ISCWeB)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동 행복도, 35개국 중 31위’라는 암담한 지표가 나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동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인권이 보장받기 위한 한국 사회의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아동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아동인권 보장의 법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아동인권 보장이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자체에는 학생인권조례를, 국회에는 아동인권기본법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 그리고 학생/청소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라 요구해야 한다. 국제 인권 규범을 국내의 인권 현실로 만드는 뚝은 바로 아동 자신과 그 주변의 지지자, 옹호자들에게 달려 있다.

*글쓴이 약력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책임활동가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대학입시거부로살을바꾸는투명가방공 등 활동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민간보고서(2018) 및 2019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과정에 NGO 대표단으로 참여
-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국가인권위원회, 2020) 공저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돋보기

아동학대와 아동의 생명권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을 이야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기본권은 '생명권'일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에 따른 이윤 추구가 우선시 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위치는 하나의 물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인지,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의 인간존엄을 무시한 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또한 경제적 이유 등을 핑계로 가족 간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동반자살'이라 표현해서는 안 될 극심한 아동 학대이며 아동·청소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식탐이 많다고, 거짓말을 잘 한다고, 고집이 세다고, 다른 아이에 비해 유별나게 행동한다고, 밥을 잘 안 먹는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육아에 무지하다고,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극심하다고,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아이를 학대하고 죽인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순 없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김동석·황인아 판사, 2019년 7월 선고한 '아동 학대치사' 사건 판결문 中)

인간의 권리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생명존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고재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란?

-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규범
- 공동체의 책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규정함

“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의 인권을 보호받고 싶다면 학생인권옹호관을 찾아주세요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되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신청 방법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관할지역	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부천 군포의왕 광명 김포 시흥	고양 파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남양주 가평 포천
전화상담	031-820-0632	031-820-0633	031-820-0634
방문상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실		
구제신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https://more.goe.go.kr/shr/index.do)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신청'		

※ 전화 및 방문상담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구제신청 등의 청원권 행사는 비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괄·검토] 심한수(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

이창휘(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기획·편집] 최지혜(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발행일] 2021년 9월 3일

[디자인] PP디자인(031-247-2227)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실린 글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